

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 : 최정순 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268호

다. 발의일자 : 2018. 11. 27

라. 회부일자 : 2018. 12. 28

2. 제 안 사 유

-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선도적 전환 및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개발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에너지정책위원회 위원 수를 50명으로 함(안 제12조제2항)

나. 실행위원회를 대체하여 에너지정책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
(안 제12조제5항)

4. 참고 사항

가. 관련 법령 :

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

다. 기 타 :

- 1)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토 의견

가.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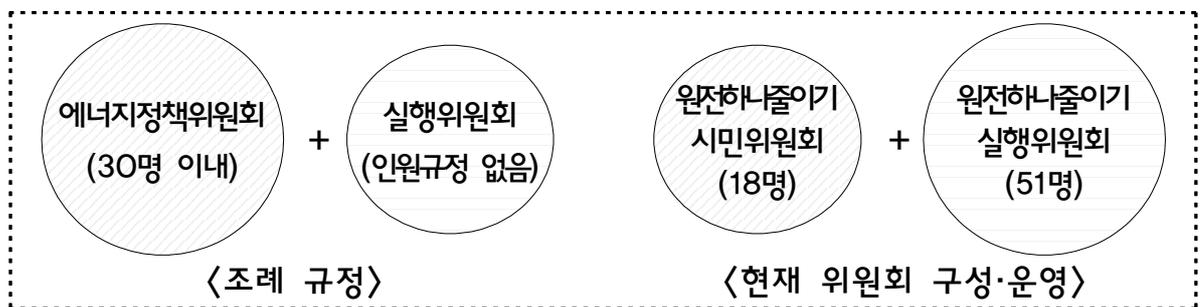
- 본 조례안은 현행 에너지정책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하고 실행위원회를 대체하여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1)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

- 현행 조례 제12조는 에너지정책위원회(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)의 역할, 구성, 임기,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, 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그러나 현행 조례상 규정과 달리 에너지정책위원회, 즉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 활동은 유명무실한 반면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한 실행위원회가 비정상적으로 중심 위원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.



2) 위원회 위원 수 조정 및 분과위원회 설치(안 제12조제2항 및 제5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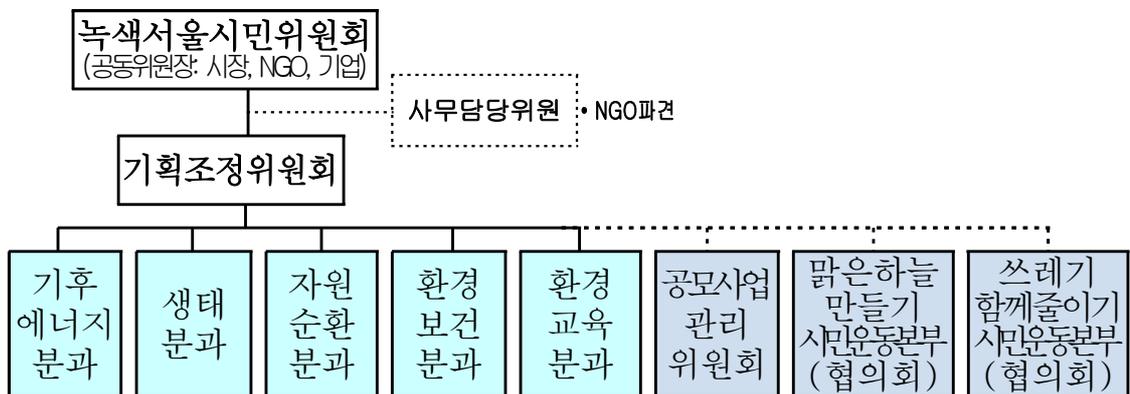
- 원전하나줄이기 시민위원회(에너지정책위원회)는 서울시장을 포함한 각계1)

저명인사(당연직) 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상징성만 가질 뿐 회의 소집이 어려워 실질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태이며, 실제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현황을 보더라도 연 1회²⁾에 지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활동 없이 운영되고 있음.

또한, 조례(제12조)에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조례를 확대 해석하여 구성, 운영되고 있는 실행위원회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문제 제기 및 시정요구가 있었음(2017년,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).

- 따라서 안 제12조제2항 및 제5항과 같이 실행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에너지정책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위원 수를 조정(50명 이내)하고 에너지정책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은 그간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,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이와 관련하여 현재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경우도 위원회 위원 수 100명 이내에서 기후·에너지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 있는 바, 에너지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시 이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.



<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 현황>

1) 시장, 교육감, 환수위원장, 종교계 및 시민단체 대표 등

2) '16년도(1월 28일), '17년도 1회(12월 6일), '18년도 회의 개최 실적 없음